MCIAK
MUSIC CONCERT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정관

2021. 10. 15 개정
2025. 02. 25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영문: Music Concert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약칭 국문표기 : 음공협, 영문표기 : MCIAK 이하 "법인" 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본 법인의 지부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경기지부
2. 광주전라지부
3. 대구부산경상지부
4. 대전세종충청지부
5. 그 외 사업의 목적에 필요에 따라 지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법인은 대중음악 공연산업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튼실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대중음악 공연의 권익을 위하며, 대중음악 공연 업계의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추구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 상품을 발굴·육성함으로써 한국 대중음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제문화 교류에 이바지, 문화산업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 협회 회원들의 협력을 통한 공동 콘텐츠 개발을 통해 수출입 확장 및 산업 박람회 개최 및 교류의 장 육성
1. 대중음악 공연문화의 활성화와 공연 종사자 시장의 파악 및 DB를 활용한 정책 연구
1. 예비 대중음악공연인에 대한 지원과 신규 창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일자리 창출
1. 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체육시설의 증축 및 개보수, 용도변경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자문
1. 대중음악공연산업 용어의 표준화와 산업 규모, 안전 등 사례 조사 및 정책 연구
1. 대중음악공연산업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1.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기부금 모금 공연
2. 문화콘텐츠 개발

3. 협찬 및 광고
4. 공공기관 공모 및 지원사업

제6조 (이익의 제공)

1. 법인이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사나 출연자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3.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1. 본 법인의 회원은 대중음악공연 제작, 기획, 연출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다.
① 정회원은 준회원 중에서 이사회 승인을 얻은 회사
② 준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대중음악공연 종사하는 회사
③ 명예회원은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사 또는 개인(자연인)으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법인과 협력하는 회사 또는 개인(자연인)으로 한다.
2. 각 회원을 구성하는 요건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명예회원, 협력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회원은 각 분과별로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3. 정회원은 법인의 사업에 우선적인 혜택을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회비의 종류
① 가입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② 연회비 (정회원)
③ 특별회비 (특별회원, 명예회원) 단,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이사회를 통해 연장 할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1.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6인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1인

제13조 (임원의 선임)

1. 법인의 임원은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재적 회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위배되는 행위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15조 (임원의 선임제한)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면책)결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가 이사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7.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유고 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임원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임원은 새로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보고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고문 및 자문위원)

법인의 활동을 지도, 자문할 수 있는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정관 제21조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법인에 등록된 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 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온라인 총회 규정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정회원 5분의 1 이상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총회 개시 후의 제출은 무효로 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법인과 회원 간의 소송의 개시 및 종결에 관한 사항.
1.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회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정관 제27조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온라인 이사회 규정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이사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 (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해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정관 개정안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한 기본재산의 처분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그 밖에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의 1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총회,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출석한 이사가 그 내용을 확인 후 각 기명날인하고 이를 보존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 (재산의 처분 및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제공, 의무 부담, 권리 포기하고자 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2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3. 기본, 운영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33조 (재원의 구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의 수익금
3. 기부 및 협찬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5. 기타 수익금

제34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 (예산편성)

1.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법인의 세입·세출예산 중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 (결산)

1.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 및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법인의 결산 내용 중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7조 (차입금)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업무감사 연1회 이상 실시하며 부득이 한 경우 서면 감사로 대체 할 수 있다.

제39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의 1(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1. 법인은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이 법인의 설립자

② 이 법인의 임원.

③ 위 각 호의 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④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7장 사무국

제40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필요한 부서와 업무를 수행할 간사를 둘 수 있다.
3. 법인의 직원은 이사회가 정한 인사 규정에 따라 회장이 임명 혹은 임용, 채용 등 한다
4. 직원의 인사, 보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1조 (법인해산)

1.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4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공고 사항과 방법)

1. 법령이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mciak.com)에 공고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세 칙

제1조 (용어의 정의)

1. 공연 :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주최 : 세칙 제1조 1장에 의거한 공연에 개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관 : 주최사의 공연에 전체적인 관리 감독 행위를 말한다.
4. 기획 : 공연에 대한 전체적인 유무형의 진행 방향 행위를 말한다.
5. 연출 : 공연 기획에 대한 유형의 결과를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정회원의 구성)

1.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사로 구성한다.

① 제2장 7조(회원의 자격) 1항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증 상의 설립일 기준으로 법인 설립 3년 이상이거나 주요 인력이 5년 이상의 경력 있는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을 얻어 정회원 자격을 정한다.

② 최근 3년간 연인원 5,000명 이상의 유료 온·오프라인 공연을 주최, 주관, 기획, 연출한 회사

2. 사무국은 준회원 중에서 업계 활동과 법인 활동 참여도를 별도로 판단하여 정회원 승급 대상 회원을 1년에 2회 이사회에 상정한다.

제3조 (준회원의 구성)

1. 준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부여받는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회사

② 제2장 7조(회원의 자격) 1항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증 상의 설립일 기준으로 설립 1년 이상인 이상의 경력 있는 회사

③ 최근 1년간 연인원 1,000명 이상의 유료 온·오프라인 공연을 주최, 주관, 기획, 연출한 회사

2. 준회원은 사무국에 가입 희망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한다.

제4조 (명예회원의 구성)

1. 명예 회원은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사 또는 개인이다.

2. 이사회 추대로 구성한다.

제5조 (특별회원의 구성)

1. 특별 회원은 공연 주최, 주관, 기획, 연출한 자가 아니더라도 법인과 협력할 수 있는 회원이다.

2. 사무국에 가입 희망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한다.

제6조 (자격의 변경 및 상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항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를 통해 회원의 자격이 변경될 수 있다.

① 사기, 횡령, 폭행 및 성범죄 등 회원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3개월 이상 회비가 미납되었으며, 특별한 의사 없이 연락되지 않을 경우

③ 회원사의 개별적인 사유로 공연활동이 2년 이상 없는 경우

④ 별도의 정회원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

2.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당해 연도마다 재심사를 통해 회원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회원 구성의 의결)

1. 회원 구성에 관하여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29조 2항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8조 (온라인 총회 및 온라인이사회)

1. '온라인 총회/온라인 이사회'(이하 총회/이사회)의 소집은 제20조와 제26조에 준한다.

2. '총회/이사회'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출석·의결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방식을 뜻한다.
3. '전자통신매체'는 인터넷상에서 전송 및 게시되는 문서와 실시간 영상통화를 뜻하는 것으로,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
① 웹문서
② 이메일
③ 영상통화
④ 위 1,2,3항과 연동되는 전산 데이터베이스
4. '총회장/이사회장'은 총회/이사회의 안건 및 논의 과정이 게시되는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를 뜻한다.
5. '투표용지'는 전자통신매체를 경유하여 표결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문서를 뜻한다.
6. '출석'은 투표용지 수신 후 개봉이 확인된 경우를 뜻한다.
7. '안건의 제출'은 제안된 안건이 의장의 확인을 거쳐 총회장/이사회장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상태를 뜻한다.
8. '공고'는 회원 개인의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통신매체의 발송을 뜻한다. 개인정보 및 대외비 항목을 제외한 공고 내용은 가급적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홈페이지(mciak.com) 등에도 공개적으로 게시한다.

제9조 (회비 징수)

1. 정회원의 연 회비는 매년 1월 1일에 징수한다
2. 정회원 중 연 회비를 분할 납부하는 회원사는 매달 1일에 징수한다
3.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회원사는 회비를 월 단위로 분할 납부한다
4. 협회 회원 가입비는 30만원이다
5.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연회비가 없다. 단 가입비는 납부한다.
6.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통해) 회비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5 . 02. 25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회장	이종현	(날인)
부회장	고기호	(날인)
부회장	신원규	(날인)
이사	김형일	(날인)
이사	유승호	(날인)
이사	황재호	(날인)
감사	김정섭	(날인)